



■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 한-인도네시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 강화 등으로 동 산업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I.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개요

(1) 은행업

□ 2013년 기준 인도네시아 은행권의 총자산은 4,071억 달러이며, 대출액은 2,706억 달러, 수신액은 3,010억 달러로 추정

-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은행의 총자산, 대출액, 수신액 증가율은 2011년까지는 20%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기준금리 인상, LTV 비율 인상 등 규제 강화 등으로 최근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임.

<표 1> 인도네시아 은행산업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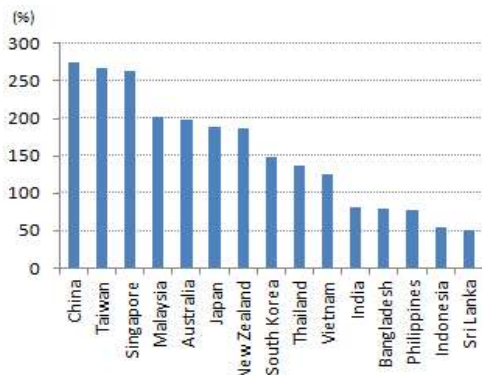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e	2014 ^t	2015 ^t
총자산	402.5	442.3	407.1	491.1	599.8
대출액	242.4	281.0	270.6	320.7	395.0
수신액	306.9	334.6	301.0	379.1	463.0

자료: B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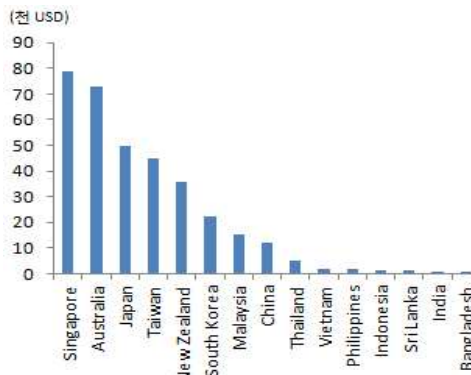
- 2013년 인도네시아 은행의 GDP 대비 총자산 비율은 56%로 태국, 베트남, 인도 등에 비해 낮으며, 인도네시아의 1인당 예금액은 1,500달러로 1인당 국민소득의 42% 수준이고, 최근까지 성인의 약 20%(2011년말 기준)만이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여력이 풍부하다고 판단됨.

<그림 1> GDP 대비 총자산 비교



자료: BMI(2013년 기준).

<그림 2> 1인당 예금액 비교



자료: BMI(2013년 기준).



□ 총 1,700여개 상업은행과 지방은행이 영업 중으로, 인도네시아 금융 당국은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중

- 2014년 6월말 기준, 인도네시아의 상업은행은 총 120개(국영은행 4개, 민영은행 116개), 지방은행은 1,634개이며,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음.
 - ※ 지방은행의 업무영역은 대체로 상업은행과 유사하나, 중앙은행의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요구불예금, 외환업무, 보험 등은 취급할 수 없음.
- 민영상업은행 중 11개, 지방은행 중 163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에서 정한 각종 사회·경제적 제약 조건에 따라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이 이루어지는 이슬람은행임.
 - 이슬람은행에서는 이자수수료와 투기·도박적 요소와 관련된 거래는 금지되며, 수익과 손실을 공동 부담함.
- 2014년 6월말 기준, 국영은행의 자산은 1,827조 루피아(약 1,509억 달러)로 은행산업 총자산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큰 상황이지만, 외국계 은행의 점유율도 약 39% 수준까지 상승하였음.

<표 2> 인도네시아 5대 상업은행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은행명	구분	총자산	총예금	ROE	ROA
1	Bank Mandiri	국영	60,238	45,714	22.5	2.7
2	Bank Rakyat Indonesia	국영	51,453	41,436	29.7	3.6
3	Bank Central Asia	민영	40,781	33,786	24.6	3.0
4	Bank Negara Indonesia	국영	31,771	23,984	19.9	2.5
5	CIMB Niaga	민영	17,984	13,454	17.7	1.7

자료: BMI(2013년 기준).

- ※ 3개 국내은행(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총 4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Single Presence Policy¹⁾ 규제 도입(2012.12)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기존 두 현지법인을 통합함.(2014.3)

1) 동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I장 참조



□ 최근 지속된 경제성장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정부 규제로 은행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양호

- 경제성장에 따른 대출 증가에 힘입어 2013년말 기준 은행의 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 ROA)은 1.4~3.6%,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ROE)은 14.3~29.7%의 높은 수준을 기록함.
- 2013년말 기준 인도네시아 상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에 비해 높은 5.3%를 기록했으나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14년 6월에는 4.2%로 축소되었음.
- 상업은행의 순이익은 2012년 2,075억 달러에서 2013년 2,43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6월말에도 전년동기 대비 16.4% 증가한 1,549억 달러에 달하였음.
- 2013년 인도네시아의 부실채권(NPL) 비율은 1.8%를 기록하였으나, 경기 둔화에 따른 도소매업종의 부실채권 증가로 2014년 6월 NPL 비율은 2.2%로 상승함.

(2) 비은행 여신전문업

□ 인도네시아의 비은행 여신전문업은 파이낸스업과 기타파이낸스업으로 구분

- 인도네시아의 비은행 여신전문업은 파이낸스사, 벤처캐피탈, 인프라파이낸스 회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파이낸스업과 신용보증기관, 인프라보증회사, 2차 모기지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기타 파이낸스업으로 구분됨.
- 파이낸스사는 리스, 팩토링(Factoring), 카드 등을 포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인프라파이낸스사는 재대출 및 후순위대출을 주로 취급함.

□ 2012년말 기준 파이낸스업에서 파이낸스사의 비중이 96%에 달하며 벤처캐피탈과 인프라파이낸스 비중은 각각 2%에 불과

- 파이낸스사의 총자산은 2008년 168.5조 루피아에서 2012년 341.8조 루피아로 연평균 22.4% 증가하였는데, 총자산이 1조 루피아를 넘는 58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85%에 달함.



- 파이낸스사의 순이익은 2008년 6.4조 루피아에서 2012년 12.2조 루피아로 급증하였으며, 2014년 6월 기준 ROA도 3.0%로 높은 수준임.
- 파이낸스사의 무수익금융자산(Non-Performing Financing) 비율이 2008년 2.7%에서 2012년 2.0%로 축소되어 건전성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한편, 이슬람금융²⁾을 활용한 파이낸스업 회사는 2008년 4개에서 2012년 35개로 증가하였으며, 총자산도 2008년 0.6조 루피아에서 22.7조 루피아로 급성장하였음.

※ 국내업체 중에서는 롯데캐피탈, 롯데카드는 현지법인 형태로, 수출입은행은 현지 Mandiri 은행과의 합작법인 형태로 파이낸스업에 진출하였음.

- o 2012년 기준 벤처캐피탈사의 총자산과 총투자액은 각각 7.2조, 4.4조 루피아를 기록하였으며 무역, 호텔업, 건설업에 대한 영업 비중이 높음.
- o Indonesia Infrastructure Finance와 Sarana Multi Infrastructure가 인프라 파이낸스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후순위대출과 직접대출 비중이 높음.

□ 기타 파이낸스업의 경우 공적수출신용기관(ECA)과 전당업 중심

- o 기타 파이낸스업의 경우 공적수출신용기관(ECA)과 전당업의 총자산은 각각 46.4조, 29.3조 루피아인 반면, 기타 보증회사(7조 루피아)와 2차 모기지(Mortgage)업체(6조 루피아)의 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음.
- o 2009년 수출촉진을 위해 설립된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Indonesia Exim Bank)의 총자산은 2010년 20.6조 루피아에서 2013년 46.4조 루피아로 성장하였으며 2013년 순이익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7,777억 루피아에 달함.
- o 전통적 전당업 대출은 2008년 8.2조 루피아에서 2012년 23조 루피아로, 이슬람 금융의 일종인 샤리아 관련 전당업 대출도 2008년 0.4조 루피아에서 2012년 2.6조 루피아로 증가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전당업 전문 국영 기업인 Pegadaian를 통한 대출을 개인과 영세업체에게 실시하고 있음.

2) 실물매매 방식인 무라바하(Murabahah), 리스 형식인 이자라(Ijarah), 출자형식인 무샤라카(Musharakah), 신탁 금융인 무다라바(Mudharabah) 등을 활용하며, 인도네시아 파이낸스업의 경우 무라바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4%로 가장 많음. (2012년 기준)



- 신용보증기관은 영세업체 및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급성장하여, 총자산 규모가 2008년 1.7조 루피아에서 2012년 7.0조 루피아로 증가함.
- 주택보급률 확대 정책에 따라 2차 모기지업체의 주택저당증권(MBS)³⁾ 거래 금액은 2009년 0.5조 루피아에서 2012년 1조 루피아로 증가하였으며 만기 1년 이상 대출액 또한 2010년 1.4조 루피아에서 2012년 3.9조 루피아로 급증하였음.

(3) 보험업

□ 2013년 인도네시아의 수입보험료(Gross Premium Written)⁴⁾는 193조 루피아(약 183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 2013년 보험시장은 생명보험 142.5조 루피아, 손해보험 50.5조 루피아로 구성되어 있음.

<표 3> 인도네시아 보험산업 시장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e	2014 ^f	2015 ^f
생명 보험	시장규모(억 달러)	102	153	136	142	165
	보험침투도(%)	1.2	1.7	1.5	1.6	1.6
	보험밀도(달러)	42.0	62.1	54.3	56.2	64.6
손해 보험	시장규모(억 달러)	42	46	48	50	56
	보험침투도(%)	0.5	0.5	0.5	0.6	0.5
	보험밀도(달러)	17.4	18.6	19.3	19.8	21.9
계	시장규모(억 달러)	145	199	183	191	220
	보험침투도(%)	1.7	2.3	2.1	2.1	2.1
	보험밀도(달러)	59.4	80.8	73.4	75.7	86.1

- 주: 1) 시장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
 2) 보험침투도: 수입보험료/GDP
 3) 보험밀도: 1인당 보험료

자료: BMI.

3)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으로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
 4) 수입보험료(Gross Premium Written) = 원수보험료(Direct Premium Written) + 수재보험료(Reinsurance Assumed) - 해약환급금 지급. 원수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수재 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가 타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얻는 수익을 의미함.



-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2013년을 제외하면 15%를 상회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의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는 각각 2.1%, 73.4달러에 불과하여 아직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BMI는 보험을 계획적인 저축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증가, 경제성장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상승 등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2013년말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84개 손해보험사, 47개 생명보험사, 4개 재보험사, 5개 보험대리업체가 영업 중

- 2012년 기준, AllianzLife(32.8%), Sinar Mas MSIG(13.1%), Prudential Life(12.6%) 등 3개 업체가 생명보험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현지 보험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 자금조달여력이 높고 마케팅 경험 등이 풍부한 외국계 보험사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 한화생명이 2012년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생명보험업에 진출해 있음.
- 손해보험업의 경우 경쟁이 매우 치열해 수입보험료가 1억 달러 이상인 회사는 Sinar Mas, Astra Buana 등 8개에 불과함.
- 2012년 기준, 화재보험시장에서는 Sinar Mas(9.4%), Astra Buana(8.1%), Jasa Indonesia Persero(7.8%), Central Asia(5.5%), Wahaha Tata(4.4%), Adira Dinamika(4.2%) 등의 시장점유율이 유사함.
 - ※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3개가 현지법인 형태로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업에 진출해 있음.

(4) 증권업

□ 인도네시아 증권시장은 2007년 이후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ndonesia Stock Exchange, IDX) 단일 체제로 운영중

- 자카르타 증권거래소(Jakarta Stock Exchange, 1992년 설립)와 수라바야 증권거래소(Surabaya Stock Exchange, 1989년 설립)가 2007년 합병되어 IDX가 설립됨.
-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물가상승률 하락, 친(親)시장 성향인 조코 위도도의 대통령 당선 등에 힘입어 2014년 하반기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14년 10월말 현재 자카르타종합지수는 전년말 대비 20.2% 상승하여 5,137 포인트를 기록함.

<표 4>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주요 지표

(단위: 개, 조 루피아)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10월
상 장 기 업 수	420	440	462	483	501
주 가 지 수	3,703	3,822	4,317	4,274	5,137
시 가 총 액	3,247	3,537	4,127	4,219	5,021
거 래 대 금	1,176	1,226	1,116	1,522	879

자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 2013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6.2조 루피아 수준이나, 특정 종목에 편중

- 2013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6.2조 루피아인데, 거래대금 상위 50개 종목이 총거래대금의 73.0%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종목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함.
- 또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정부 및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실제 유통 주식수는 상대적으로 적음.

□ 2013년말 현재 영업중인 증권사는 116개인데, 상위 50개사가 전체 거래대금의 90.7%를 취급

- 매매비중은 개인고객보다는 기관 및 외국인 고객의 매매 비중이 높고 국영 및 외국계 증권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음.

※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등 3개사가 증권업에 진출하였음.

<표 5> 증권사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조 루피아, %)

순위	증권사명	거래대금	점유율
1	Credit Suisse Securities	206.1	6.77
2	CIMB Securities	185.1	6.08
3	UBS Securities	178.9	5.88
4	Deutsche Securities	130.5	4.29
5	Macquarie Capital Securities	128.5	4.22

자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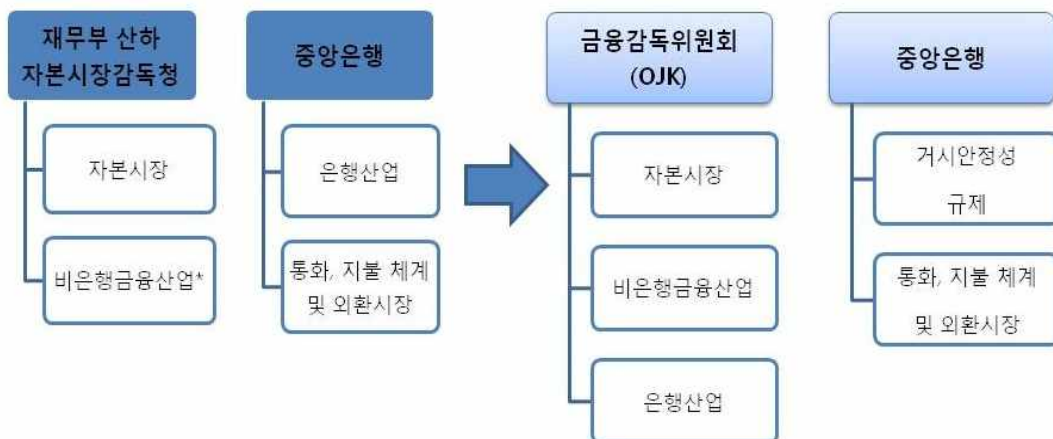


II. 금융산업 감독 체계

□ 통합금융기구인 금융감독청이 감독 업무를 일괄 담당

-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 규제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신설된 통합금융기구인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이 자본시장(증권업), 은행업, 비은행 금융산업(보험, 연금, 비은행 여신전문업), 이슬람금융 등에 대한 감독을 일괄 담당하고 있음.
- 기존에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은행업, 재무부 산하 자본시장감독청(Bapepam)이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규제공백이 발생하는 등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음.
 - 일례로, 마이크로 파이낸스 부문에 대한 감독 책임을 Bapepam과 BI가 서로 회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국영은행에 대한 BI의 감독권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음.
- 금융감독청에 대한 법률(2011년 통과, 2013년 발효)에 따라 OJK는 2013년 1월 자본시장 및 비은행 금융산업 감독업무를 Bapepam에서 흡수하였고, 동년 12월 31일 BI로부터 은행업 감독권한을 인수함.
 - BI는 거시경제 안정성, 통화 지불체계, 외환시장 등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게 됨.

<그림 3>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체계 변화



* 비은행금융산업은 연금, 보험, 벤처캐피탈, 보증기관 등의 금융기업을 포함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인용).



□ 금융감독 관련 법규 개정, 신설이 이어지고 있으나 규제공백도 상존

-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의 발전 유도, 국제적 제도 변화에 따른 규제 도입 필요성 등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신설이 이어지고 있으나, 비은행 여신전문업처럼 규제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음.
- 은행업 진출을 추진할 경우, 1998년 개정된 은행법⁵⁾과 BI 또는 OJK가 도입한 규정⁶⁾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현재 금융 및 은행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하원의 제11 위원회(Commission XI)에서 은행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법률 개정 결과에 따라 규제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비은행 여신전문업 진출시에는 2006년 제정된 여신전문업 관련 규정⁷⁾을 검토해야 하며 해당 규정의 감독 규제는 은행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함.
 - 향후 OJK의 감독체계가 확립될 경우, 여신전문업 감독 관련 규제는 은행업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음.
- 보험업 인허가, 영업 및 건전성 관련 사항은 인도네시아 보험법⁸⁾ 및 과거 재무부의 관련 규정⁹⁾에 명시되어 있음.
 - 보험법 개정안이 2014년 9월 23일 하원을 통과하고 10월 23일부터 발효 하였으나, 이에 따른 하위 규제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음.
- 증권업 진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¹⁰⁾ 및 관련 규정¹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Act No. 7 of 1992 Concerning Banking as amended by Act No. 10 of 1998

6) 진출절차 및 요건 관련 주요 규정으로는 Regulation No. 11/1/PBI/2009, SK DIR No. 32/ 37/KEP/DIR, SK DIR No. 32/51/KEP/DIR, Regulation No. 14/8/PBI/2012 등이 있으며, 영업행위 및 건전성 감독 관련해서는 Regulation No. 14/18/PBI/2012, Regulation No. 7/3/PBI/2005 등이 있음.

7) Regulation No.84/PMK.012/2006

8) 당초 보험법은 Act No. 2/1992 Concerning Insurance이나 금년 개정됨.

9) 주요 규정으로는 1992년 보험법 개정 이후 발표된 Regulation No. 73/1992, Regulation No. 63/1999, Regulation No. 39/2008, Regulation No. 53/2012, Decree No. 426/KMK.06/2003 등이 있음.

10) Capital Market Law

11) 주요 규정으로는, 진출절차와 관련된 Rules Number V.A.1: Securities Company Licensing Procedures와 순조정운전자본 등 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Rules Number V.D.5: Maintenance and Reporting of Net Adjusted Working Capital 등이 있음.



Ⅲ. 업종별 인허가 절차 및 요건

(1) 은행업

□ 외국인 단독법인 형태의 은행업 진출은 불허

- 외국인은 현지인과의 합작법인 또는 지점 설립, 현지은행의 지분 인수 등의 형태로 인도네시아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으나, 외국인 단독법인 형태의 진출은 허용되지 않음.
- 은행법과 이슬람금융법에 따라 외국인은 비이슬람금융 상업은행 설립 및 지분투자만이 허용되며, 지방은행이나 이슬람은행업 진출은 금지됨.
 - 은행법과 이슬람금융법¹²⁾은 인도네시아인, 인도네시아인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법인, 지방정부만이 지방은행이나 이슬람은행을 설립 및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점 설립을 통한 외국계 은행의 진출은 1988년 신규 진출이 금지되었다가 1999년 다시 허용되었음. 그러나 현재 하원에서 검토 중인 은행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다시 금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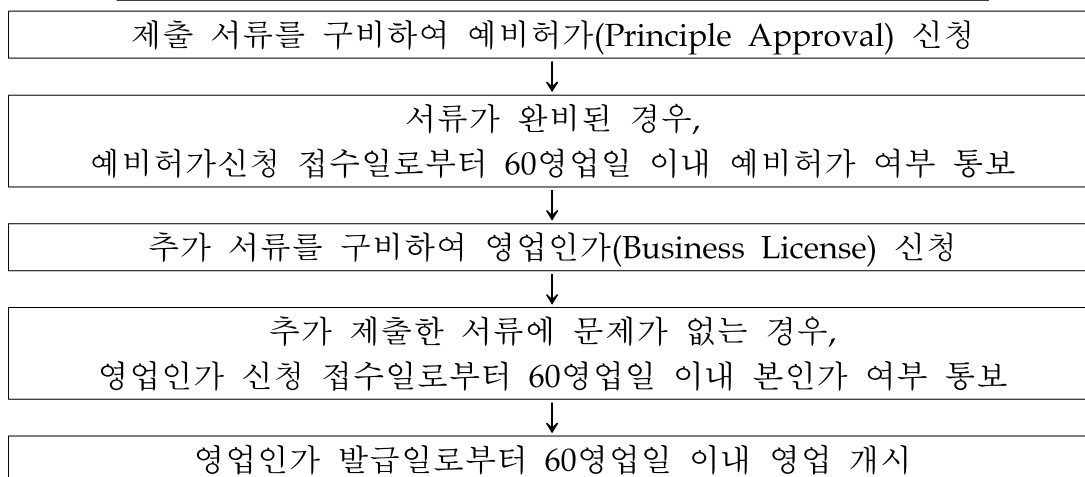
□ 합작법인 또는 지점 설립을 추진할 경우에는 OJK의 예비허가(Principle Approval)와 영업인가(Business License) 취득 필요

- 예비허가는 은행설립 준비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며, 유효기간은 예비허가 발급일로부터 1년임.
- 은행법은 영업인가 부여시 감독기관의 검토사항으로 조직 및 경영진, 자산규모, 지배구조, 은행업에 대한 전문성,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있음.
 - 현지에 설립될 은행의 자본금은 3조 루피아(약 2.5억 달러)를 상회해야 하며, 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외국계 은행의 자본금은 해당 은행의 성격에 따라 200조~1,000조 루피아를 요구하고 있음.
 -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반드시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사진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절성 심사(Fit and Proper Test)를 통과해야 함.

12) Act No. 21 Concerning Sharia (Islamic) Banking



<그림 4> 합작은행 또는 은행지점 설립시 인허가 절차도



자료: BI Regulation No. 11/1/PBI/2009.

- 또한, 은행법에 따라 해당 은행의 지배주주(Controlling Shareholder)*가 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적격성심사’**를 거쳐야 함.

* 은행법 상 지배주주는 특정 은행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분율이 25% 미만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경영진을 통제할 수 있는 주주를 의미

** 감독당국은 재무능력, 법규 준수, (외국 금융기관인 경우) 본점소재국 금융감독 기관의 추천서 및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적격성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함.

- 한편, 지점 설립의 경우에는 3조 루피아의 영업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신청인은 자산 기준 세계 200위 이내 은행에 해당되어야 함.

□ 외국인의 지분 인수는 감독당국 심사 및 법무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분율 한도 규제는 최근 강화

- o 지분 인수를 통해 은행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 등 내부 절차를 마친 후 감독당국 심사 및 법무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외국인이 지배주주인 경우에도 영업범위 및 활동에 대한 차별은 없지만, 지분 인수시 은행법에 따라 지배주주가 되는 외국계 은행도 지배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함.
- o 당초 외국인의 지분한도는 99%였으나, 2012년 BI가 한도를 하향조정하여, 감독당국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융기관은 40%, 산업자본은 30%, 개인은 20%의 지분율 한도가 적용됨(비이슬람 상업은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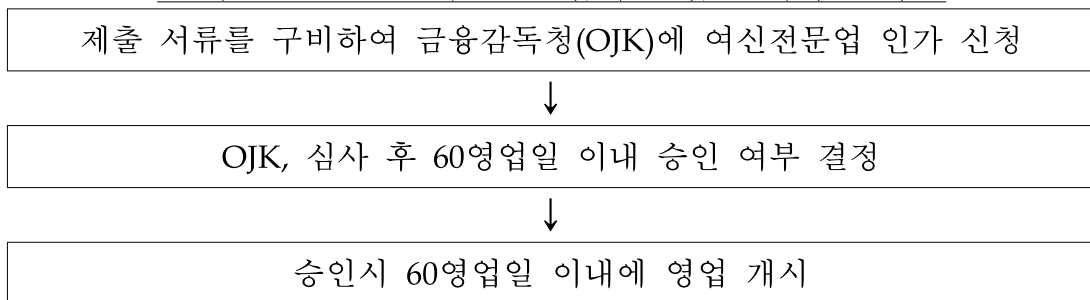
- 또한, 2012년 12월 BI는 특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두 개 이상의 은행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Single Presence Policy)하는 규정을 신규 도입 하였음.
- 현재 하원에서 검토 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외국계은행의 현지은행 지분을 한도를 99%에서 40%까지 축소하였음.

(2) 비은행 여신전문업¹³⁾

□ 외국인의 여신전문업 진출은 합작법인의 형태로만 허용되며, 인허가 절차도 은행에 비해 간소

- 은행업의 인허가 절차는 두 단계를 거치지만, 여신전문업 인허가 절차는 한 단계에 불과함.
- OJK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의 여신전문업 진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
 - * 설립신청서, 정관, 이사회 및 임원 관련 자료(금융업 종사 경력, 범죄이력, 파산 여부, 겸직여부 등), 자본금 납입 확인서, 사업계획서(향후 2년간), 합작계약서 등
- 신청인은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여신전문업 영업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영업 개시 후 10일 이내에 감독당국에 이를 보고해야 함.

<그림 5> 비은행 여신전문업체 설립 인허가 절차도



자료: Regulation No.84/PMK.012/2006

- 파이낸스회사의 최소법정자본금은 1,000억 루피아(약 838만 달러)이며 외국인은 총 납입자본의 최대 85%를 소유할 수 있음.

13) 우리 업체의 진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비금융 여신전문업 중 파이낸스업을 대상으로 서술.



(3) 보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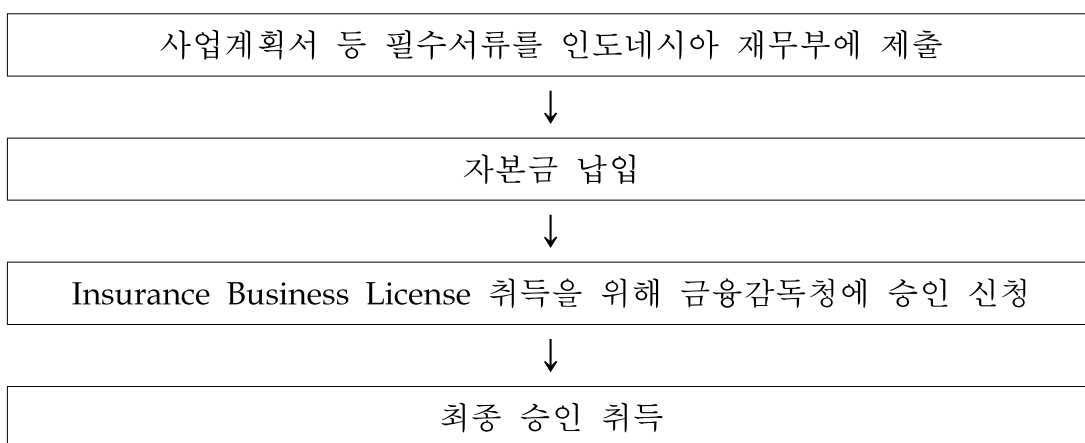
□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단독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진출은 불허

- 외국인은 현지 보험사와의 합작법인 또는 지점 설립 또는 현지 보험사의 지분 인수를 통해 인도네시아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으며, 100% 지분을 보유한 단독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진출은 허용되지 않음.
- 인도네시아 보험업에 진출 가능한 외국인은 보험사 또는 보험사 지분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최소한 A등급 이상이며 동사의 자본금이 투자금액의 5배 이상인 경우로 제한됨.

□ 합작법인 또는 지점 설립 추진시 감독당국인 OJK의 영업인가 필요

- 1999년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따라 별도의 예비허가 절차는 생략되었으며, 투자청(BKPM)에 외국인투자 등록 절차를 마친 후 금융감독청 등 관할 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함.

<그림 6> 합작보험사 또는 보험업체 지점 설립 인허가 절차도



자료: Government regulation No. 73, 1992.

- 보험업 영업인가 부여시 OJK의 주요 검토요건으로는 자본금 규모, 보험사의 조직 및 경영진 등이 있음.
- 최근 최소자본금 규제가 상향조정되면서 업종별로만 규제가 차등 적용되어, 2014년 12월말부터는 생명보험 및 화재보험사는 1,000억 루피아, 재보험사는 2,000억 루피아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음.



- 보험사의 조직은 위험관리, 재무관리, 고객서비스 부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임원진과 사외이사는 OJK의 적절성 심사(Fit and Proper Test) 대상임.
- 또한, 합작 형식으로 진출하는 경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업을 모두 취급할 수 없으며 한 가지 업종만 택해야 함.

□ 현지 보험사에 대한 지분투자 시에는 OJK의 사전 승인과 함께 주주 자격 적격성 검사 통과 필요

- o 현지 보험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감독당국인 OJK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주 자격에 대한 적절성 검사를 통과해야 함.
- 다만, 주식시장에서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분 변동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OJK의 승인 대상이 아님.

□ 신 보험법으로 외국인의 지분한도 강화 및 Single Presence Policy 도입

- o 외국인 지분한도는 80%로, 기존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동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었으나 신보험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기존 보험법 체제에서는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법인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법인 등이 보유한 지분을 인도네시아인의 지분으로 판단하여, 일부 외국법인은 현지에 설립한 법인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사실상 100%의 지분을 확보하였음.
- 그러나 신 보험법은 상기 요건을 ‘직간접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법인이 보유한 지분’으로 강화하여 외국인 지분을 규제 회피를 차단하였음.
- 다만, 기존에는 합작법인 설립시 외국인의 지분율 한도를 80%로 규정하여 설립 이후 증자시 인도네시아인의 자본금이 유지될 경우 외국인의 지분율 상승을 용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규제 여부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임.
- o 보험업에도 Single Presence Policy가 도입되어, 특정 보험업체를 통제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등 업종별로 두 개 이상의 회사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음.
- 다만, 기존에 상기 규정에 배치되는 경우에 대한 세부 규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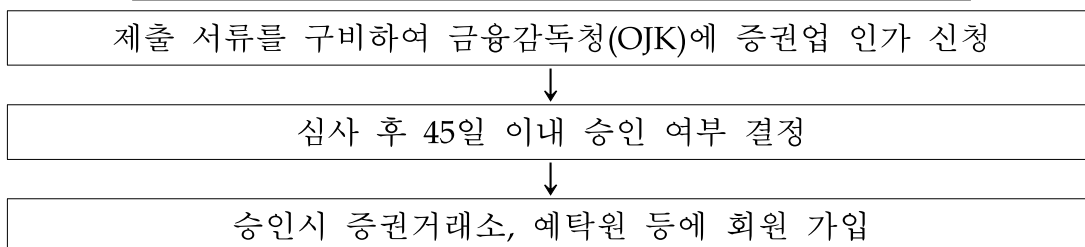


(4) 증권업

□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 설립 또는 기존 증권사 지분 인수를 통해 외국인 인도네시아 증권업 진출 가능

- 외국인은 지점 형태의 증권업 진출이 불가능하며, 증권사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외국인은 투자청(BKPM)에 외국인투자 등록을 마친 후 금융감독청 등 관할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함.

<그림 7> 외국인의 증권업 법인 설립시 인허가 절차도



자료: Rules Number V.A.1: Securities Company Licensing Procedures

-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여 OJK가 보완 통지를 한 경우, 보완 통지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하면 인가 신청이 취소됨.
- 감독당국은 중개(Brokerage), 인수(Underwriting), 투자자문(Investment manager)으로 구별하여 인허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인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증권사는 중개 업무도 처리할 수 있으나, 중개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증권사의 인수 업무 취급은 금지됨.
- 최소 납입자본금은 중개(300억 루피아), 인수(500억 루피아), 투자자문(250억 루피아) 등 취급 업무별로 차등 적용됨.
-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신규법인 설립을 억제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증권사 지분 인수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진출 방안임.
-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네시아 증권사의 지분의 인수할 경우, 동 기업이 증권사이면 99%, 비증권사이면 85%의 지분을 한도가 적용되나, 투자대상 증권사가 현지 상장사인 경우 100% 지분인수도 가능함.



IV. 업종별 영업 및 건전성 감독사항

(1) 은행업

□ 여신한도, 자본적정성비율(CAR) 등 규제장치 시행중

- 동일차주 및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한도는 각각 자기자본의 20%와 25%이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10%로 제한됨.
 -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Tier 1, Tier 2 자본의 합을, 외국계 은행의 지점인 경우에는 본점의 순기금(Net Head Office Funds)을 자기자본으로 정의함.
 - 해당 은행의 이사, 경영진, 해당 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등 직간접적으로 해당 은행의 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와 해당 은행이 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인 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8%의 최소 적정자본비율(CAR)을 적용하였으나, 2012년부터 은행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별 리스크 등급에 따라 CAR을 차등 적용함.
 - 은행 자체적 자본적정성 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대체로 6개월 주기로 은행의 리스크 등급을 조정하고 있으나, 은행별 리스크 등급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1등급인 은행은 기존과 동일하게 8%를 적용하나, 2등급 9~10%, 3등급 10~11%, 4,5등급 11~14%를 적용함.
- 또한, 자산을 5단계(Current, Special Mention, Sub Standard, Doubtful, Loss)로 분류하여 등급별 최소 총당금 적립 비율을 명시하고 있음.
 - 해당 자산 잔액에서 담보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산 등급에 따라 최소 1%에서 최대 100%의 총당금을 설정해야 함.

<표 6> 자산 등급별 최소 총당금 적립률

등급	Current	Special Mention	Sub Standard	Doubtful	Loss
연체일	-	90일 이내	90~120일	120~180일	180일 이상
적립률	1%	5	15	50	100



□ 외국계은행 지점(현지법인 제외)에게는 완충자본(Capital Equivalency Maintained Assets, CEMA) 규정¹⁴⁾ 적용

- 완충자본은 BI 발행어음, 국채 또는 회사채로만 구성 가능하며, 규모는 최소 1조 루피아 이상, 총부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8%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
- 규모 요건은 2017년 말까지 충족하면 되나, 총부채 중 비중 요건은 2013년 6월까지 충족할 것을 요구함.
- 현재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이 아닌 지점을 운영중인 은행은 HSBC, Citibank, Standard Chartered 등 대형은행으로, 규제 도입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여신전문업

□ 은행에 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며, 자본적정성 항목 중에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 관련 규정을 적용

- 여신전문업은 수신업무를 취급할 수 없어 은행 대비 규제가 약한 편이며, 현재 OJK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어 규정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 여신전문업체의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채권 또는 주식 발행이 있는데, 은행차입 총액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자기자본에는 납입자본 이외에 후순위대출도 포함하는데, 후순위대출이 납입자본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은행업과 달리 유동성 비율과 부실채권(NPL) 관련 규제가 없으나 부실채권의 경우 대체로 BI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연체 90일 이상을 부실채권으로 간주하고 있음.

□ 투자 대상 및 지분 참여 비율, 총자산 대비 금융관련 매출채권 비율, 어음발행 및 리파이낸싱 제한 등 투자 및 운영 관련 규제도 상존

- 여신전문업체의 지분 투자는 인도네시아 내 금융회사에 한해 허용되며, 지분율은 투자 대상기업 납입자본의 25%로 제한됨.

14) 보다 자세한 사항은 Circullar Letter No.14/37/DPNP - Minimum Capital Requirement based on Risk Profile and Fulfillment of Capital Equivalency Maintained Assets (CEMA) 참조.



- 대출 등 금융활동 관련 매출채권이 여신전문업체 총자산의 40%를 상회해야 하고, 어음 발행 및 보증은 불허함. 리파이낸싱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최초 자동차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한 고객의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 가치의 60%까지 리파이낸싱이 가능함.

(3) 보험업

□ 지급여력(Solvency Margin)¹⁵⁾ 규제,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을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 및 지급능력을 관리

- 모든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120%를 지급여력비율 목표로 설정하되, 항상 동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또한, 보험사는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며, 미경과보험료¹⁶⁾ 적립금은 순보험료의 40%(단, 보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0%) 이상을 적립해야 함.

□ 은행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는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미약

- 보험사는 판매상품의 내역, 청구절차, 은행과의 상호협조문 등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 수수료 상한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수수료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음.

□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된 한도 설정

- 금리연계상품에 대한 투자제한은 없으나, 국내 주식 및 채권, 부동산 등은 총투자금액의 20%, 외국 주식 등은 총투자금액의 10% 이내에서 투자가 허용됨. 반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고 있음.

15) 지급여력제도는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을 기초로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지급여력금액은 보험회사의 순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책임준비금)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 항목이며,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경험통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서 보험회사가 보유해야 할 적정잉여금을 의미함.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2, 금융감독원)

16) 보험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한 보험료 중에 아직 책임이 남아 있는 보험계약기간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뜻하며 미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됨.



(4) 증권업

□ 업무 성격에 따라 순조정운전자본¹⁷⁾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

- 인수, 중개 업무 취급을 위한 순조정운전자본은 각각 250억 루피아, 자산 운용 업무 취급시 요구되는 순조정운전자본은 2억 루피아 이상이며, 운전 자본은 총부채의 4% 이상이어야 함.
 - 고객의 주식계좌를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중개 업무 취급시 요구되는 순조정운전자본은 2억 루피아임.
- 순조정운전자본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계좌개설, 매수 및 공매도 등의 업무가 제한되며 순조정운전자본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OJK에 제출해야 함.
 - 연속 30일 이상 혹은 연중 60일 이상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증권사 인가가 박탈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의 지분을 소유한 증권사간의 지배구조 참여에 제한

- 증권거래소는 증권사들의 출자 등으로 설립되는데,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지분을 소유한 증권사들은 상호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할 수 없음.
- 또한 상호 간의 이사회 임원 임명 등 경영 및 회사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됨.

17) 순조정운전자본 = (조정)유동자산 - (조정)유동부채.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산정시 중앙은행 및 정부 부채의 10%, 단기금융상품자산의 20%, 해외 주식의 90% 등을 각각 할인하여 조정한 수치를 반영함



V. 우리 금융기관의 진출방안

□ 현지에서 신규 금융업체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무역,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요 활용 가능

- 인도네시아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국, 제11위 수입국으로, 양국간 교역규모는 우리나라 총교역규모의 2.3%인 248억 달러를 기록함.
 - 2013년 기준 원자재가 수출의 71%, 수입의 87%를 차지하고, 자본재도 수출의 20%를 점유하고 있어 무역금융, 해상보험, 금융리스 수요가 있음.
- 2014년 6월말 기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8위 해외투자대상국으로,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금액 누계는 총해외투자액의 2.9%인 79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금융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최근 양국간 교역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며, 우리나라 관련 금융수요에 집중할 경우 현지 고객기반 확대가 어려워 현지 금융시장의 성장성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음.

□ 규제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 아직 규제 체계가 안정화되지 않은 업종이 있으며, 최근 규제당국이 자국 소재 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규제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 보험법이 최근 개정되었고 은행법도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관련 법규의 빈번한 제·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은행 여신전문업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외국자본이 통제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명시적 차별은 없으나, 외국인 지분율 한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은행업의 경우 지점 형태로 진출한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신 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소재 자산에 대한 보험은 자산 소유자의 국적과 무관히 자국 소재 보험사에 부보하도록 명문화하였음.



□ 적극적인 현지화를 통한 진출 전략이 장기적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

-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기업의 금융수요가 증가하며,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도네시아 중산층 인구가 2020년에는 약 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기업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고객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는 도서국가로 인프라가 취약하며 영토가 넓어 지점망 확충을 통한 고객기반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금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유통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 호주의 Commonwealth 은행은 모바일 banking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지점망이 취약하나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시골 및 지방도시 지역 진출에 성공함.
 - 또한, 인도네시아의 40세 이하 인구 중 35%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금융상품 개발, 현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외국인 지분율 규제 강화, Single Presence Policy 도입 등 제약요인도 있으나,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점진적 구조조정 정책, 지분인수를 통한 현지화의 장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 신설보다는 지분인수를 통한 진출이 현실적임.
 - 지분인수시에는 피인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경험, 피인수기관의 고객기반 등 무형자산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어 신규 합작법인 설립에 비해 현지화에 유리함.
 - 다만, 피인수기관의 현지 자산에 내포된 신용위험 관리, 인력 구조조정 문제 등 지분인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책임조사역 임영석(02-6255-5704)
 yslim@koreaexim.go.kr
 조사역 유재준 (02-6255-5705)
 jjyu@koreaexim.go.kr



< 참 고 문 헌 >

- 강대창, 김유미, “최근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7 No.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2.
- 금융감독원,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2013. 7.
- 김보영, “금융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재조명”, 자본시장연구원, Vol.3 No.4, 2013. 12.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 Daily 비타민: 인도네시아 은행산업 현황 및 시사점, 2013. 4.
- Allens, *An overview of the Indonesian insurance industry for foreign investors*, 2014. 2.
- Business Monitoring International, *Indonesia Commercial Banking*, 2014. 3Q.
_____, *Indonesia Insurance*, 2014. 3Q.
- DBS Vikers Securities, *Indonesian Banks and Multifinance*, 2014. 6.
_____, *Multi-finance Companies*, Regional Industry Focus, 2012. 3.
- Deloitte, *Banking across borders; International expansion opportunities for emerging markets-based banks*, 2014. 5.
_____, *Growth opportunities for financial services in Indonesia; Building the right approach*, 2012.
- Herbert Smith Freehills, *New Insurance Law Passed by Indonesian House of Representatives*, 2014. 10.
- IMF, *Implementation of the IOSCO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 2012. 7.
- MD&Partners, *Indonesia’s New Insurance Law*, 2014. 10.
- Nomura Institute of Capital Markets Research, *The Rise of Retail Financial Services in Indonesia*, 2014. 2.
- Norton Rose Fulbright, *Banking security law*, 2012. 12.
_____, *Indonesia’s Parliament passes New Insurance Law*, 2014. 10.
- PWC, *THE REPORT Indonesia 2012*, 2012.
- Soemadipradja&Taher, *Managing Risk - Indonesia’s New Insurance Law*, 2014. 10.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Financial Service Report*, 2014. 2Q.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http://www.bi.go.id/id/Default.aspx>)

인도네시아 재무부 (<http://www.kemenkeu.go.id/en>)

인도네시아 자본시장감독청 (http://www.bapepam.go.id/old/old/E_Legal/Law/index.htm)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http://www.ojk.go.id>)